

 <p>거창군 Geochang County</p> <p>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</p>	<h1 style="font-size: 4em; margin: 0;">공 보</h1> <p style="font-size: 1.5em; margin: 0;">제932호 2023. 10. 11.(수)</p>	
---	--	---

선 결	기관의 장

고 시

거창군 고시 제2023-124호	거창군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	2
거창군 고시 제2023-125호	거창군계획시설(시설:유통업무설비) 실시계획인가 고시 ...	6
거창군 고시 제2023-126호	도로명주소 고시	8

공 고

거창군 공고 제2023-1488호	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	9
거창군 공고 제2023-1489호	거창군관리계획(시설:주차장) 결정(변경)(안) 열람 공고 ...	19
거창군 공고 제2023-1490호	거창군관리계획(시설:주차장) 결정(변경)(안) 열람 공고 ...	22

회 램									
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: 거창군 편 집 : 기획예산담당관 (☎055-940-3043)
 ※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(<http://www.geochang.go.kr>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

거창군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

「농어촌정비법」 제64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경상남도 거창군 빈집정비계획 및 관련 도서를 다음과 같이 결정·고시합니다.

2023년 10월 10일

거창군수

1. 계획의 개요

가. 계획명 : 경상남도 거창군 빈집정비계획

나. 계획목적 :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'빈집정비의 기본 방향'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수립

다. 주요 내용

- 1) 빈집정비의 기본방향
- 2) 빈집의 현황 및 실태
- 3)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
- 4)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자원조달계획
- 5)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
- 6) 그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라. 계획범위

- 1) 계획기간 : 기준연도 2023년, 목표연도 2027년
- 2) 공간적 범위 : 경상남도 거창군 전역

마. 계획의 법적 근거 : 「농어촌정비법」

2. 빈집실태조사 결과

가. 실태조사 결과

1) 빈집등급별 현황

(단위 : 호, %)

구분	일반빈집		특정빈집		합 계
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
현황	43 (16.8)	114 (44.5)	62 (24.2)	37 (14.5)	256 (100.0)

2) 빈집 주택유형별 현황

(단위 : 호, %)

구분	단독주택	다가구주택	다세대주택	연립주택	아파트	합 계
현황	256 (100.0)	0 (0.0)	0 (0.0)	0 (0.0)	0 (0.0)	256 (100.0)

나. 빈집정비계획 대상 빈집현황

1) 빈집등급별 현황

(단위 : 호, %)

구분	일반빈집		특정빈집		합 계
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
현황	42 (18.0)	108 (46.4)	57 (24.5)	26 (11.2)	233 (100.0)

2) 빈집 주택유형별 현황

(단위 : 호, %)

구분	단독주택	다가구주택	다세대주택	연립주택	아파트	합 계
현황	233 (100.0)	0 (0.0)	0 (0.0)	0 (0.0)	0 (0.0)	233 (100.0)

3. 주요 내용

가. 빈집정비계획의 구상

1) 빈집정비계획의 비전 및 목표

가) 비전 : 군민이 행복한 정주환경, 도약하는 더 큰 거창

나) 계획의 목표

-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창출
-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커뮤니티 조성
-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생활 SOC 확충

2) 추진전략

가) 등급별 전략

- 특정빈집(3·4 등급) 안전조치 및 관리, 철거 정비사업
- 일반빈집(1·2 등급) 민간의 자발적 정비유도, 기능 재활용

나) 빈집밀집지역 전략

-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우선 정비사업 및 지역의 주거환경 정비

나. 철거계획

(단위 : 호, 백만 원)

구분	1차연도 (2023년)	2차연도 (2024년)	3차연도 (2025년)	4차연도 (2026년)	5차연도 (2027년)	합 계
개소	5	5	6	5	5	26
금액*	6	6	7.2	6	6	31.2

* 철거예산 : 호당 최대 1.2백만 원

다.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

(단위 : 호, 백만 원)

구분	1차연도 (2023년)	2차연도 (2024년)	3차연도 (2025년)	4차연도 (2026년)	5차연도 (2027년)	합 계
개소	26	15	15	15	12	83
금액*	2.6	1.5	1.5	1.5	1.2	8.3

* 안전조치 및 관리예산 : 호당 최대 0.1백만 원

라. 빈집우선정비구역 (3개소, 33호)

(단위 : 호)

연번	행정동	일반빈집		특정빈집		합 계
	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
1	남하면 무릉리	6	4	1	1	12
2	가조면 기리	1	8	2	0	11
3	남상면 임불리	3	5	2	0	10
합 계		10	17	5	1	33

마. 리모델링 활용계획

(단위 : 호, 백만 원)

구분	1차연도 (2023년)	2차연도 (2024년)	3차연도 (2025년)	4차연도 (2026년)	5차연도 (2027년)	합 계
개소	1	1	2	1	1	6
금액*	3	3	6	3	3	18

* 리모델링 활용예산 : 호당 최대 3백만 원

바. 재원조달계획

- 1) 철거계획 : 총 31.2백만 원(호당 1.2백만 원)
- 2)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: 총 8.3백만 원(호당 0.1백만 원)
- 3) 리모델링 활용계획 : 총 18백만 원(호당 3백만 원)
- 4) 기타
 - 빈집(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)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·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
 - 도시재생사업(도시재생뉴딜사업, 새뜰마을사업) 및 타사업(농촌빈집정비사업)과 연계·추진하여 빈집을 활용할 수 있음
 -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의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

4. 기타사항

가. 관계도서 : 게재 생략(거창군 도시건축과 비치)

나.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도시건축과(☎055-940-360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거창군 고시 제2023-125호

거창군계획시설(시설:유통업무설비) 실시계획인가 고시

『거창약초 유통센터 작업장 비가림시설 설치』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(시설:유통업무설비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 고시합니다.

2023년 10월 11일

거창군수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종류 : 군계획시설(시설:유통업무설비)
 - 명칭 : 거창약초 유통센터 작업장 비가림시설 설치
3. 사업시행 규모 및 내용

종류	시설명	위 치	시행규모(m ²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결정면적	금회시행			
				대지면적	건축면적		
군 계획시설	유통업무설비	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번지 일원	94,523.9	37,263	기존 15,575.59 증축 86.45	기존 15,575.59 증축 86.45	거창군 고시 제2008-43호 (2008.09.17.)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명 : 거창군수
 - 주소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
5. 사업시행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3년 12월까지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: 붙임과 같음
7.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,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(☎055-940-358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비 고
						주소	성명	권리명	권리자	
1	거창읍 대평리	1347	창	37,263	37,263		거창군			

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10. 11.

거창군수

○ 도로명주소 고시대상

- 건물번호 부여 :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금원산길 198-1 등 2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 (변경·폐지)사유	비고
(별 도 열 람)				

○ 도로명주소 사용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는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-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(☎055-940-3313)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거창군 공고 제2023-1488호

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

「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, 「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년 10월 10일

거 창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「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

2. 개정이유

○ 「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별지 서식을 정함(안 제2조)

- 1) 별지 제1호서식 : 지원금 신청서
- 2) 별지 제2호서식 : 지원금 정산서
- 3) 별지 제3호서식 : 지출결의서
- 4) 별지 제4호서식 : 방법일지
- 5) 별지 제5호서식 : 방법순찰 등 활동사진

4. 의견제출

가.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(행정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출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그 밖에 참고사항 등

다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(055-940-3169), 이메일(fbghtjs@korea.kr)

라. 제출기한 : 2023. 10. 30.(월) 18:00까지 도달

마. 제출주소 : (우50132)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(행정과)

바. 문의전화 : 055-940-3183

붙임 1. 의견제출서 1부.

2.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.

3. 관련법령 1부. 끝.

[붙임 1]

입법예고 의견 제출서

□ 규 칙 명 : 「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 건	비 고

[붙임 2]

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청서 등) 자율방범대 및 거창군 자율방범연합대가 「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
2.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
3.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
4.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법일지
5.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법순찰 등 활동사진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() 지원금 신청서

(○○자율방범대·연합대)

(단위 : 원)

1. 사 업 명 :

2. 사업내용 :

※ 기간, 장소, 사업내용 등 기재

3. 추진계획 :

4.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

(단위 : 원)

구분	항목	계	신청금	산출기초
계				

「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·연합대 활동경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자 :

(인)

[별지 제2호서식]

() **지원금 정산서**

(○○자율방범대·연합대)

(단위 : 원)

예산과목					수령액	집행액	잔액	이자 수입
정책	단위	세부사 업	편성목	통계목				

(**세부 집행내역**)

(단위 : 원)

일 자	수령액	지출액	내 용	잔 액
합계				

※ 자율방범대·연합대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

20 년 월 일

지출관 : ○○ 자율방범대·연합대장 (인)

지 출 결 의 서

제000호	결재	담당자	총무	대장
지출과목 (비목)	매식비 / 소모품 구입비 / 피복비 등		지출일	20 . . .
지출금액				
지 출 내 용				
사용처			지출방법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명 : ○ 일자 : 20 . . . (요일) ○ 채주 : ○ 금액 : 원 ○ 지출세부내역(산출근거) : <p>※ 첨부: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</p>				

[별지 제4호서식]

조장	방법대장

○○자율방범대·연합대 **방법일지**

20 년 월

순찰일시	순찰인원	순찰자		순찰내용 (순찰 동선 및 범죠평 활동 내용 등)	비고
		성명	서명		
월 일 (○요일) 00:00 ~ 00:00	00명				

20 년 월 일

확인관 : ○○지구대장(파출소장)

(인)

[별지 제5호서식]

방법순찰 등 활동사진

일시: '00.00.00.(0요일) 00:00~00:00	일시: '00.00.00.(0요일) 00:00~00:00
일시: '00.00.00.(0요일) 00:00~00:00	일시: '00.00.00.(0요일) 00:00~00:00

관련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제29조(규칙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
□ 「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

[시행 2023. 9.13.]

제3조(지원절차) ①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사업계획서
2.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
3. 지원금 정산서
4. 지출결의서
5. 방법일지
6. 방법순찰 등 활동사진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거창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거창군관리계획(시설:주차장) 결정(변경)(안) 열람 공고

거창군관리계획(시설:주차장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10월 11일

거 창 군 수

1. 거창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■ 주차장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신설	A	주차장	북상면 병곡리 739-1번지 일원	-	증)4,985	4,985	-	

■ 변경사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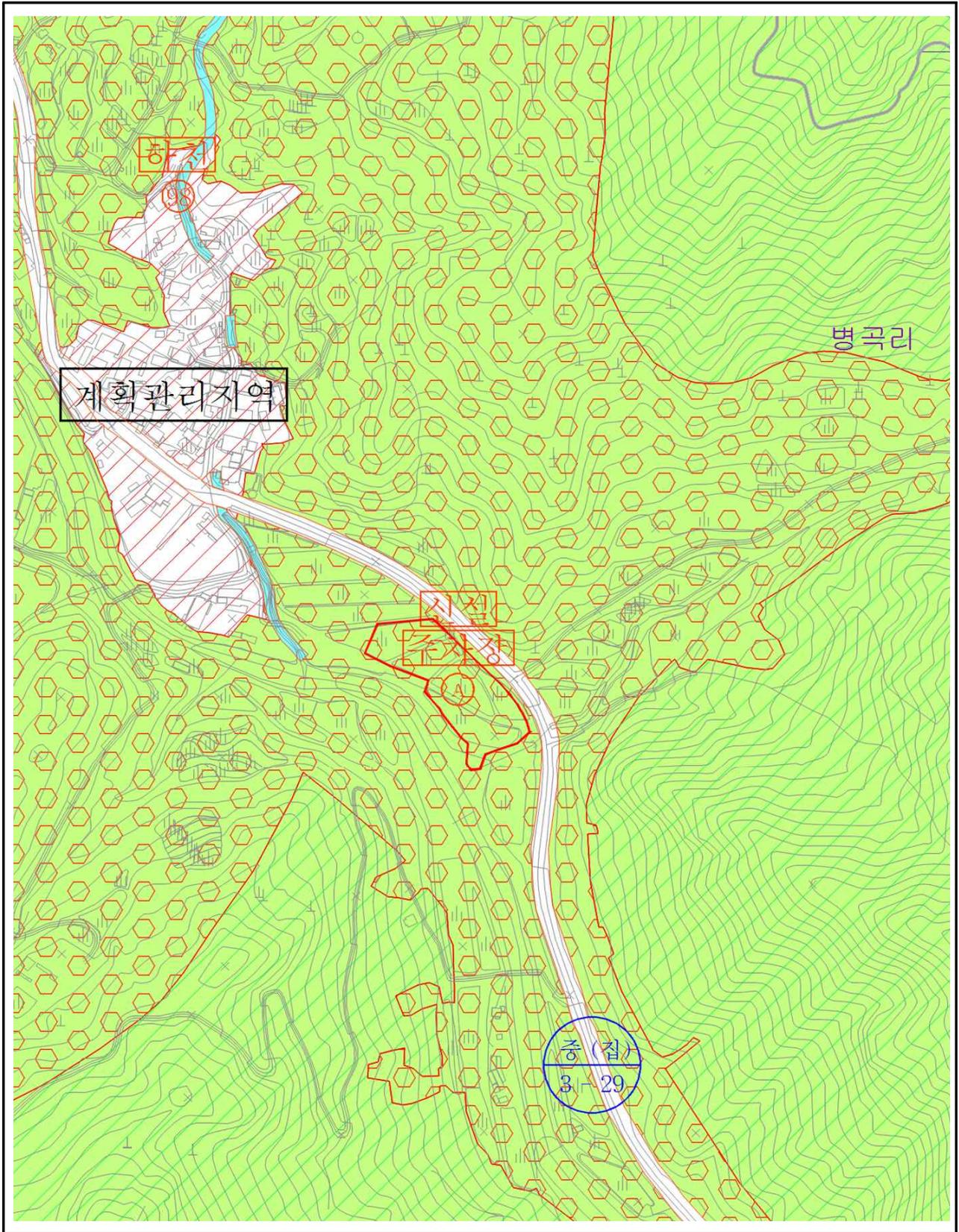
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A	주차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차장 신설 위치 : 북상면 병곡리 739-1번지 일원 면적 : 4,985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병곡 ~ 동업령 탐방객의 주차 편의 제공과 유입을 촉진하고, 지역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주차장을 신설함

2.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: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

3.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: 거창군청 도시건축과

4. 의견제출 방법 :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거창군청 도시건축과로
서면 제출
5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6.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(055-940-3584)로 문의하시기
바랍니다.

[붙임] 거창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



거창군관리계획(시설:주차장) 결정(변경)(안) 열람 공고

거창군관리계획(시설:주차장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10월 11일

거 창 군 수

1. 거창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■ 주차장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신설	A	주차장	위천면 황산리 835-2번지 일원	-	증)3,675	3,675	-	

■ 변경사유서

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A	주차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차장 신설 위치 : 위천면 황산리 835-2번지 일원 면적 : 3,675m²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송대 출렁다리 일원 주차공간 조성을 통해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, 주민 및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도모하고자 주차장을 신설함

2.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: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

3.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: 거창군청 도시건축과

4. 의견제출 방법 :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거창군청 도시건축과로
서면 제출
5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6.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(055-940-3584)로 문의하시기
바랍니다.

[붙임] 거창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

